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94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이종환, 구미경, 김경훈,
김영옥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
서상열, 신복자, 유만희,
윤영희, 윤종복, 이상욱,
이성배, 이원형, 이종태,
정준호, 최민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외래 관광객 확대를 위한 3·3·7·7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 해당 정책을 통해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관광지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음.
- 특히 관광 수요가 수용 가능 대비 초과된 지역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, 증가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의 수요를 서울 전 지역이 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신설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 전 지역의 고른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상 지역 간 관광 불균형 해소 방안 신설(안 제5조제2항제4호).
- 나.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조례 정비(안 제6조 및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관광기본법 , 관광진흥법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각각”을 “각각 공평하게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역 간 관광 불균형 해소 방안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있고,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
2. 관광·사회·경제 등 관련 전문가

3. 공정관광 관련 법인·단체의 대표

4.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시민

5.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시 관광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”을 “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구성위원”을 “재적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관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

제11조제1항 중 “제11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11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제14조 전단 중 “전부 또는 일부”를 “일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정관광”이란 관광객, 지역주민,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,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·무형의 이익이 <u>각각</u> 분배·환원되며,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·환경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각각</u> <u>공평하게</u> ----- ----- -----.
제5조(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) ① (생략)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~ 10. (생략)	제5조(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지역 간 관광 불균형 해소 방안</u> <u>안</u> 5. ~ 11. (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관광위원회	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 ----- ----- -----
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2. 관광·사회·건축·도시계획·환경·법률 등 관련 전문가
3. 공정관광 관련 법인·단체의 대표

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2. 관광·사회·경제 등 관련 전문가
3. 공정관광 관련 법인·단체의 대표
4.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

4.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시민

5.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

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~ ⑥ (생략)

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

험을 가진 시민

5.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시 관광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없을 때에는
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---
---.

제9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재적위원 -

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에게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 (생략)

제10조(지원 사업)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7. (생략)

제11조(공정관광 지원센터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관광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2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-----

⑧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지원 사업)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관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제11조(공정관광 지원센터) ① -----
---- 제10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재정지원) ① ----- 제10조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)
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
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
관광진흥 조례」 제17조제1항
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
인·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
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
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
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) -

일부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(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)제2항제4호에 지역 간 관광 불균형 해소 방안¹⁾을 추가함에 따라 정책추진 비용 발생의 여지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) 문의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검토 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기추진 사업²⁾으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그 외 규정의 경우 별다른 비용발생 요소가 없고, 특히 위원회 관련 규정은 비용변화 요소인 총 정원(Q)이 유지(10명)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 재정소요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[규정 의미해석]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지역 간 관광 불균형은 ① 관광 경쟁력 불균형, ② 관광 수요 불균형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서울시 또한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⇒ 특히 서울시는 현재 각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관광상품 개발, 컨설팅 지원, 거버넌스 구축 등과 같은 직·간접적인 관광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별다른 추가재정소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

2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관광체육국 2025년 <지역기반 관광 활성화> : 513,736천원(지역관광랩 사업 200,000천원 포함)

□ 2025 서울관광랩 운영 및 지원사업

① 자치구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

② 자치구별 포괄적·맞춤형 관광 컨설팅 서비스 구축

③ 서울시-자치구 관광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

※ 참고자료 : 2025 지역관광랩 운영 및 지원 용역 추진계획(관광정책과-2939, 2025. 3. 18.)